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청	청(지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80
	서울강남지청	02-3465-7362
	서울동부지청	02-2142-8838
	서울서부지청	02-2077-6154
	서울남부지청	02-2639-2235
	서울북부지청	02-950-9792
충북청	서울관악지청	02-3282-9085
	충북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62
	인천북부지청	032-540-7958
	부천지청	032-714-8751
	의정부지청	031-850-7739
	고양지청	031-931-2894
	경기지청	031-259-0281
	성남지청	031-788-1505
	안양지청	031-463-7367
	안산지청	031-412-1997
	평택지청	031-646-1154
	강원지청	033-269-3572
	강릉지청	033-650-2515
	원주지청	033-769-0813
	태백지청	033-550-8631
	영월출장소	033-371-6247
부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73
	부산동부지청	051-559-6664
	부산북부지청	051-309-1514
	창원지청	055-239-6534
	울산지청	052-228-1809
	양산지청	055-370-0969
	진주지청	055-760-6523
대구청	통영지청	055-650-19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60
	대구서부지청	053-605-9066
	포항지청	054-271-6749
	구미지청	054-450-3519
광주청	영주지청	054-639-1154
	안동지청	054-851-80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15
	제주근로개선지도팀	064-728-7116
	전주지청	063-240-3443
	익산지청	063-839-0023
대전청	군산지청	063-450-0529
	목포지청	061-280-0135
	여수지청	061-650-028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29
	청주지청	043-299-1255
	천안지청	041-560-2842
	충주지청	043-840-4000
	보령지청	041-930-6131
	서산출장소	041-661-5639

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시_분부터 _시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____년 ____월 ____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2-4-12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73542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원)	공제 항목	공제 금액(원)
매월 지급	기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 수당	396,984	국민연금	177,570
	야간근로 수당	16,541	고용보험	31,570
	휴일근로 수당	99,246	건강보험	135,350
	가족 수당	15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식대	100,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62,771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원)	3,472,161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수 (16시간)×16,541원×1.5		396,984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수 (2시간)× 16,541원×0.5		16,541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 수 (4시간)× 16,541원× 1.5		99,246
가족수당		100,000원×1명(배우자) +50,000원×1명(자녀1명)		150,000

※ 위 임금항목 및 공제항목 등(파란색)은 예시이므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2 임금명세서 교부
- 3 최저임금 준수
- 4 임금체불 예방



4대 기초노동질서
안내영상 QR코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붙임 파일 다운로드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과태료 함께 부과)

2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1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임금지급일
- 3 임금총액
-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 때는) 연장시간수 포함한 계산방법
-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 7 (임금공제시)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만들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최저임금 준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4 임금체불 예방

-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 :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며,
-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퇴직금 → 퇴직금계산기
→ 나의 퇴직금 계산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